

◎ 코 시

제 99 호 도시계획시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및
지적승인 24

제 100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및지적승인24

제 101 호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25

제 10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26

제 103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27

◎ 공 고

제 72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 예정지 지정공고.....27

제 75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28

제 76 호 주택개량제개발사업건축계획공람공고.....28

◎ 사 령..... 29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 1158 호

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 4. 9

서울특별시위원회교육감 하점생 인

서울특별시학교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 1 조 (수수료) ①공립의중학교, 고등학교는 각종의 증명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증 명 서	중 . 고 등 학 교	
	국 문	외 국 문
성 적 증 명 서	200 원	250 원
졸 업 증 명 서	200 원	250 원
수 로 "	200 원	250 원
재 학 "	200 원	250 원
재 적 "	200 원	250 원
졸업또는수로예정증명서	200 원	250 원
기 타	200 원	250 원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올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그 실패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 조 공립의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전조의 중, 고등학교의 예에따라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159 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산업대학제 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 4. 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인

서울산업대학제 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서울산업대학제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산업대학제 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산업대학에서 취급하는 각종 증명 (이하 " 제 증명 " 이라 한다) 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징수) ① 제 증명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 증명의 수수료는 제 증명을 청구할 때에 그 청구자로부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첨부시켜 징수한다.

제 3 조 (종별, 단위 및 금액) ① 제 증명의 종별, 단위 및 그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종 별	단 위	금 액	
		국 문	외 국 문
성 격 증 명 서	1 건	200 원	250 원
졸 업 증 명 서	"	200 원	250 원
수 료 증 명 서	"	200 원	250 원
재 학 증 명 서	"	200 원	250 원
재 적 증 명 서	"	200 원	250 원
졸업또는수료예정증명서	"	200 원	250 원
학 뒤 증 명 서	"	200 원	250 원
기 타	"	200 원	250 원

규 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77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693 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행정
 처분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

처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7. 3. 15 부터 시
 행한다.

<별표 1>

점 수 제 행 정 처 분 배 점 기 준

1. 통고처분 42개항목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규	배 점	내 용
1	신호또는 지시에 따른 외부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도로교통법 제 5 조	15	○. 신호기의 신호또는 교통경찰 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때 ○. 교차로의 직전이나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을때
2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통행	· 제 6 조 ①②	5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지 및 제한구역을 통행하였을때 ○.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해 금지또는 제한한 구역을 통행 하였을때
3	혼잡완화를 위한 제 7 조 조치위반	· 제 7 조	5	○. 경찰관이 차마등의 통행이 정체또는 정체우려가 있어 길 요한 조치명령에 불응하였을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 점	내 용
9	진로양보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16 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제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를 제외 하고는 통행우선순위의 제차가 뒤따를 경우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 진로를 우측단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치 않을 때 동일순위 또는 제후차의 속도보 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려고 할 경우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 여 도로를 양보치 않을 때
10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 17 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차의 좌측을 동행하여 앞 지르지 않을 때, 대면교통 및 진방교통에도 주의하여 도로의 상황 및 속도에 따라 경음기 사용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 로 운행하지 않을 때
1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 21 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전시 - 미리 도로의 구측 단으로 서행하지 않을 때 ○. 좌회전시 - 미리 도로의 중앙 선에 따라 교차로중심 내측으 로 서행하지 않을 때 ○. 방향전환 신호를 받은 앞차의 진로를 방해하였을 때, 진행방향 좌측도로의 제차에게 진로를 양보치 않았을 때 (동일순위의 차한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점	내 용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을때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제차보다 우선)
12	직행및 우회전차의 진 행방해	도로교통법 제 22 조	5	○ 작로 방향전환시 직행 또는 우 회전제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을때 미리 좌회전하고있는 제차가 있 을때, 직행 또는 우회전 제차가 당해차의 진로를 방해하였을때
13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 행	· 제 23 조	20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 차로에서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 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도 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의 통행을 방해하였을때
14	서행일단정지 위반	· 제 26 조	10	○ 서행위반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 을때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 행하지 않았을때 · 경사로의 정상부근에서 서행하 지 않았을때 ·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 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비 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정지위반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및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기타 시도지사가 지칭하는 장소
15	정 차 위 반	도로교통법 제 27 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횡단보도, 정널목 및 궤도, 시설내 ○ 교차로의 측단,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의 우측 및 그전후 양측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 ○ 정유소 폭기준(판)로부터 10미터이내 ○ 정널목 측단으로부터 10미터이내 ○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
16	주 차 위 반	제 28 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기기, 기구비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 ○ 소방용, 방화수조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 ○ 도로공사장구역 양단으로부터 5미터이내
17	주, 정차방법 위반	제 29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의 우측단에 정지하지 않았을 때, 단차도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50미터상거하지 않았을 때 ○ 승합자동차가 정유장에서 손님의 승강이 끝나는데로 즉시 출발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죄용법조	배 점	내 용
				하지 않거나 뒤따르는 제차의 정지불 방해하였을때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시간 및 방법에 위반하였을때
18	제차의 등화점등또는 조작불이행 가. 일반 도로 나. 고속 도로		5 10	○도로통행시 등화 • 보통승합, 승용, 소영, 특수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 원동기장치자전거-전조등 • 피견인자-미등, 차폭등, 번호등 ○야간주정차시 등화-미등 차폭등 (원동기는 미등) ○야간에 준하는 경우-안개 기타에 등으로 전방 100미터이내의 장애물을 확인할수 없을때 ○야간교행시 • 전조등의 광도감 • 전조등의 광도하향 • 보조전조등이 있을때는 전조등소등 • 전조등 일시소등 • 교통이 빈번한 장소는 계속하향 기타제차는 시도지사 지정
19	제차의 신호불이행 가. 일반 도로 나. 고속 도로	제 31 조 ①	5 10	○방향전환, 횡단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하였거나 동일방향 진행중 진로변경시는 방향지시기 (깜박이) 나 등화도 그 행위종료시까지 신호하지 않을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점	내 용
				○ 좌우회전 및 진로 변경시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서 30미터 이전 ○ 정지, 후진, 서행, 후향차에 대하 여는 그 행위를 하거나 시키고 자 할때
20	경음기 불사용	제 32 조 ①	5	○ 경음기를 올려야 할 장소에서 사 용하지 않았을때 ○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지점, 경사로 또 는 굴곡이 많은 신중도로에서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21	경음기 사용제한	제 32 조 ③	5	○ 경음기를 올려야 할 장소의의 장 소와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내에서 경음기를 사용하였을때
22	승차 및 적재제한 위반 가. 정원초과 ○ 운행상의 안전기준 을 초과하였을때 나. 적재위반 ○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초과하 였을때	제 33 조 ① 제 33 조 ②	5 15	○ 시내버스 RH 제외 - 출근시간 2시간 전 * 운행상의 안전기준 ○ 승차정원의 11 할이내 다만 화 물자동차에 있어서는 화물을 다 루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제외 * 운행상의 안전기준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은 11 할이내 ○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의 기준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비점	내 용
				<p>*분할할 수 없는 화물로서 경찰서장이 허가하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 차길이의 1/10 길이를 더한 길이 (소형 2륜 차는 적재장치 길이에 30cm더한 길이) · 폭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전 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높이 : 지방으로부터 3.5m (소형 3륜은 2.5m, 소형 2륜은 2m)
23	전인제한위반	제 34 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전인차 1대 이상을 전인하였 을때 ○ 전인차의 전단으로부터 피전인 차의 후단까지 25미터를 넘었 을때 ○ 고장차 전인 - 구렛, 쇠사슬등으로 고정치 않았을때 (피전인차전, 후 문을 올라서 전인시) ○ 피전인차의 운전자가 당해차에 승차하지 않았을때 (피전인차 전후문을 올리지 않을때) ○ 피전인차와 전인차의 거리가 5미터를 초과하였을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 점	내 무
				○ 자동차의 전인시 위석방지등 위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불 응할때
24	도장 및 표지제한 위반	제 37 조	5	○ 자동차등의 도장, 경음기, 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하였을때 이를 불이행하였 을 경우
25	제한속도위반 (30km미만) 가. 속도위반 10km 이하 나. 속도위반 30km 미만	제 42 조	10 20	○ 제한속도 및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도로의 상황 및 차물의 성능, 구조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 였을때
26	안전운전 의무위반 (난폭운전제외)	제 43 조	10	○ 조향 및 제동장치 기타의 장 치를 정확히 조작, 도로의 상 황 및 차물의 성능 구조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 였을때
27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제 44 조 ① ② ③ ⑤	20 20 10	○ 오수, 오토비산행위 ○ 보호자없이 아동, 유아가 보행 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지팡 이를 짚고 보행하고 있을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 을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때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 거나 서행하지 않을때 ○ 승객 또는 화물의 전라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적절히 닫고 운행하지 않을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점	내 용
		⑥	5	○ 운전석으로부터 이석시 정지상 태 보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않았을때
		⑦	10	○ 기타 시도 고시위반 * 월동장구 불휴대 (12월 - 익년 3월) ○ 교양카아드 불휴대 ○ 승객 승차률 급유 (승합, 승용 합)
28	교통안전교육	제 44 조 의 2	5	○ 정기교양미필 ○ 법규 위반자 교육미필
29	통행금지 또는 제한	제 54 조 ①	5	○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자와 협의 하여 그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한 통행금지 제한을 위반하였을때
30	적성검사 미필	제 61 조	5	○ 3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미필하였을때
31	수시 적성검사미필	제 61 조 의 2	5	○ 수시 적성검사 실시 지시를 미 필하였을때
31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제 62 조	5	○ 사유 발생시 관할시 도지사 에게 신고하지 않았을때
33	임시 적성검사미필	제 66 조 의 3	5	○ 임시 적성검사를 미필하였을때
34	앞지르기 금지위반	제 18 조	20	○ 앞차와 다른 제차가 나란히 운행할때 앞지르는 행위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점	내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차가 다른 제차통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때 앞지르는 행위 ○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 정차, 급경사의 내리막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앞지르는 행위 ○ 법령 규정과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시켰다는 제차를 앞지르는 행위
35	통행방법위반 (고속도로)	제 47 조	20	○ 주경차선의 좌측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았을때
36	건널목 통과방법	제 20 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건널목 일단정지를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널목 직전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후 통과하지 않을때 · 차단기가 내려졌거나 내려지고 할때, 경음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 건널목에 들어갔을때
3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정지 위반	제 24 조 (3)(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때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일시정지 하지 않았을때 ○ 피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아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때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지 않았을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점	내 용
38	횡단등의 금지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	제 47 의 7 ①	15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였을 때
39	고장등의 경우 조 치 불이행 (고속도 로)	제 47 의 10	10	○고속도로에서 고장 기타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때 고장 차량표지를 해당 차량의 후방로상에 설치하지 않았을때
40	주.정차금지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	제 47 의 8	10	○고속도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는때 외에 주정차하였을때
41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상 준수사항위반	제 47 의 11	10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때 (내무부령으로 지정)
42	고속도로 진입위반	제 47 의 9	10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때 다른 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을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

2. 중심회부 13개 항목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점	내 용
1	주차방법위반차량의 조치불응	도로교통법 제 29 조 의 2 ①	10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 정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명령에 불응할때
2	정비불량 제차의 운전금지위반	제 35 조	10	○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그에 의하 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을때
3	주위중 운전금지위 반	제 39 조	30	○ 혈액 1 밀리미터에 대하여 0.5mg 또는 호흡 1 리터에 대하여 0.25 mg 이상 음주하고 운전하였을때
4	피토시의 운전금지 위반	제 40 조	10	○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 할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 였을때 (도로회면, 굴목 운전등 현저한 과로상태)
5	위험방지조치위반	제 41 조	10	○ 음주, 과로운전자가 운전금지 명 령등 필요한 조치지시에 불응하 였을때
6	제한속도위반 (30 km 이상)	제 42 조	30	○ 속도위반 30 km 이상일때
7	교통사고발생시 신 고 불이행	제 45 조 ②	30	○ 경찰관 (관서포함) 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았을때 * 소재지 - 3 시간내 시, 군, 읍, 면 (경찰서, 지서, 파출소, 출장 소) 의 소재지내 (고속도로포함) * 기타 소재지 - 12 시간내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점	내 용
8	안전운행불이행 (난폭운전)	제 43 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위해초래 행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좌, 우, 주시태만으로 위해초래시 · 굴곡운전 ·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하여 도로의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단 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게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을때
9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 45 조 ①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10	위험방지등의 조치 불응	제 47 조 의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조치 지시에 불응할때
11	지정속도위반 (고속도로) 가. 10 km이하 나. 11 km이상 - 30 km 미만 다. 30 km 이상	제 47 조 의 0	10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속도에 위반하였을때
12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입방해	제 47 조 의 9 ②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에서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을 때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위반	제 64 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 또는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증표등을 휴대치 않고 운전하였을때 ○ 경찰관의 지시요구에 불응하였을때

서울특별시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2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694 호

서울특별시 공연장 행정
처분 기준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공연장" 다음에 "공연자
및 비공연자의 공연행위"를 삽입한다.

제 4 조중 "공연장 내에서의 영업자"
다음에 "공연자및"을 삽입하고
비공연자의 공연행위" 다음의 및
관람자에게"를 삭제하며 "에"를
삽입한다.

제 4 조 본문중 "다음" 다음에 "각호
외"를 삽입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고처분 1회받은자가 재차
경고처분을 받을 행위물 하연물
때에는 3일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2. 경고처분 1회받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행위물 하연물 때에
는 처분 양정에 2일을 가산
3. 영업정지처분 1회 받은 자가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행
위를 하연물 때에는 처분양정대
5일을 가산 또는 위반사항이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 정 처 분 기 준

일련 번호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1	경 고	1.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불이행 (공연법제 5조) 2. 종업원 영부의 불비치 (법제 8 조) 3. 공연장의 불결 (법제 20 조)

일련 번호	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4. 임점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위반사항의 시정 지시 불응 5. 주등을 소등하지 아니하고 뉴-스 영화 및 문화영화 상영
2	3일이내의 영 업 정지	1. 재해예방조치 불이행 (법제 9 조) 2. 미성년자 입장불가표시 불이행 (제 22 조) 3. 화장실 및 관람석에의 소독 불이행 4. 정원, 관람로등의 게시의무 불이행 (법제 21 조) 가. 관람자의 준수사항 나. 각계층별 관람자 정원과 좌석배치도 다. 관람로 기타 영외 여하물 불문하고 요금을 받을 때에는 그 종류의 금액 라. 공연물이 극영화인 때에는 그와 동시 상영 하는 문화영화 및 뉴-스 영화의 계명 마. 기타 행정관청이 게시할 것을 지시한 사항 5. 공연장 및 공연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법제 22 조) 가. 좌석이 정원에 달하였을 때에는 '만원' 표 찰을 입장권 발매창구에 붙이기 나. 장내흡연단속에 대한 게시 및 주지불이행 다. 출입구, 비상구, 계단, 복도, 통로 또는 추위 외 공지에 통행, 피난의 장애물 방치 라. 관람자 출입하는 장소에 적당한 조명도물 가진 시설불비

관 련 번호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p>마. 비상구의 문호를 관람자가 곧 개방할 수 없는 시설을 한때</p> <p>바. 합부로 연출자 또는 연기자를 관람석에 출입시키거나 관람자를 악실 . 무대 등에 출입시켰을 때</p> <p>사.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한때</p> <p>아. 당해 공연의 용에 공하는 각본 가요사대본 설명서 등을 항시 공연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입점공무원의 제시요구에 불응한 때</p> <p>자. 영사실에 해당 기술자 이외의 자를 출입시켰을 때</p> <p>차. 기타 관계 행정관청이 명령한 사항을 불이행</p> <p>6. 관람자가 다음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때 (법제 23조)</p> <p>가. 공연장내를 불결하게 하였을 때</p> <p>나. 공안상 . 풍속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때</p> <p>다. 압포 매수 행위를 한 때</p> <p>라. 장내 흡연 행위를 한 때</p> <p>7. 정당한 이유없이 공연시간 위반</p> <p>8. 구내매점 및 이동판매원 지시사항 위반</p> <p>가. 상품외 표시가격을 위반한 판매행위</p> <p>나. 영화상영시 관람석내에서의 이동판매 행위</p> <p>다. 불량식품 판매</p> <p>라. 감 이 행 위</p> <p>마. 판매원 불친절 행위</p> <p>바. 기타 영업주에 대한 지시사항 위반</p>

일련 번호	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3	4일 - 5일의 영업정지	1. 공연자 등록위반 (법제 3 조) 2. 공연장의 양수신고 불이행 3.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위반 (법제 10 조) 4. 공연전일까지 관람료의 인가불 득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법제 15 조) 5.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을 게시 또는 사용한 때 (법제 16 조) 6. 외국인의 국내공연시 공연허가의 미필 (법제 19조) 7. 외국 공연물의 공연제한위반 (법제 19 조의 2) 8. 면허 불소지자의 영사행위 (법제 22 조의 2) 9. 공연법 또는 공연법에 의한 행정명령을 위반하 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때 10. 공안 또는 위생상의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때 (법제 17 조)
4	6일 - 7일의 영업정지	1. 공연신고불 필하고 상영 불이행 2. 입장권을 팔지 않는 관람료의 현금 징수 3. 공연신고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때 (법제 17 조) 4. 공연자의 전속출연자가 기준인원이상 출현하지 아니한때 (법제 17 조) 6. 공기검사 결과 위생상 위해하다고 판정되었을때 (시행령 제 46 조)
5	8일 - 10일의 영업정지	1. 뉴스 영화 및 문화영화의 불상영 2. 관계공무원의 검사 임검 또는 검열을 방해하거 나 기피할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장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한때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때 5. 공연신고 불이행 (법제 14 조)

일련 번호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6. 각본심사 미필 (법제 14 조의 2) 7. 기타 공연법 또는 공연법에 의한 명령에 위 반함이 정한때 (법제 17 조)
6	3 일 - 4 일의 영업정지 4 일 - 5 일의 영업정지	1. 미성년자 입장 가. 5 명 미만 입장 나. 5 명 이상 10 미만 입장 다. 10 명 이상 5 명 초과시마다 1 일 가산
7	경 고 3 일 이내의 영업 정지 4 일의 영업정지	1. 관람자 정원 초과인장 가. 20 명 미만 나. 20 명 이상 30 명 미만 다. 30 명 이상 40 명 미만 라. 40 명 이상 5 명 초과시마다 1 일 가산
8	공연장설치허가 취소 또는 1월 - 3 월 이내의 영 업정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 (법제 12 조) 2. 공연장이 관하여 허가된 받은 3 월 이내에 공사 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 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때 (법제 12 조) 3. 공연장이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 할때 (법제 12 조) 4. 3 월 이상 휴장한 때 (법제 12 조) 5. 공연법 또는 공연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 조건에 위반함이 중대한때 (법제 12 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 훈 령 </div>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임시고용원 급식비 지급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		과 같이 발령한다. 1977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468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임시고
용실급식비지급규정폐지규정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임시고용원
급식비 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99호

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일단
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가. 결정(신설)조서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12조 동법제13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보입니다.

197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상화동주택단지)	영등포구 방화동 648와 3의 8필지	16,550 ㎡ (4,704평)	

◎ 서울특별시고시제 100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5)의 권한 위임 사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

1977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가. 하수도 건설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규 모	연 장	기 점	중 결	비 고
신설	하수도	B = 4 m	252 m	이문동 350-11	이문동 285-1	
"	"	B = 1.5 m	430 "	마천동 118-18	마천동 735-10	
"	"	B = 6 m	270 "	천호동 459	성내동 90-4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01호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실시 계획 인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315 호 (76.11.22) 로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 시설)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년 4월 11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처 : 강남구 판포동산 34 번지의 60 필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실시 계획 인가</p> <p>3. 사업시행면적 : 111,918.2 ㎡ (33,855.1 평) 개발면적 : 80,867.1 ㎡ (24,462.2 평)</p> <p>4. 사업시행자주소 . 성명 : 중구 영동 2가1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수환</p> <p>5. 사업착수, 준공예정 년월일 가. 착수년월일 : 1977.4. 나. 준공예정일 : 1978.10.30</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생략)</p>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 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0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및 같은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경기도 고양군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 (성신여자사범대학 및 부속초·중·고등학교)	성북구 돈암동 173의 29필	69,792 ㎡ (21,113.26평)	
"	학교 (일신중·고등학교)	강남구 가락동 412의 5의 12필	21,213 ㎡ (6,417 평)	
"	학교 (등촌고등공민학교)	영등포구 등촌동산 37의 5의 20필	42,328 ㎡ (12,804.1평)	
"	학교 (해인학교)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삼송리 99-11의 1필	9,074 ㎡ (2,745 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03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및지적승인

1.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요청한 다음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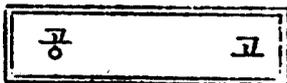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77.4.12
서울특별시장

○ 전기공급 설비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및규모	비고
신설	154KV 잠실변전소	성동구 자양동 509외5필	5,510㎡	옥내변전소
"	" 현지발전소	서대문구현제동산5-54외6필	4,400㎡	"
기정	" 화곡변전소	영등포구 외발산동150-2외8필	14,631㎡	"
변경	"	영등포구 외발산동150-2외9필	17,476㎡	증 2,847㎡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공고제 72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예정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역촌추가, 시흥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서울특별시

공고제 35 호 (77.2.22)로 공람 공
고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
지구획정리사업 제 55 조와 행정권한
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의 규정에 외거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에 따라 환지에정지물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조서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

1977. 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75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1.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신사동 337의 4호의 환지에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조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4.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 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572.6 평을 476.4평으로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신사동 337의 4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76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건축계획 공 략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12 호 (76.9.4) 및 동 고시제 15 호 (77.1.28) 로 사업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인 제기 1, 전농 2, 답십리 1, 홍은 6 및 삼청 1 등 5 개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계획을 건축법 시행령 제 152 조

에 외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사업구역내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한다.

2. 건축계획서는 당시 주택구 주택개
량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 공고
에 대한 개별서류 송달은 이 공
고로 갈음한다.

1977. 4.

서울특별시 장

사 령

○ 1977.4.4

용 산 구 이 운 호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6.12.11가
발령 제712호 징계처분(전체)을
동일자로 취소함.

강 남 구 이 상 규
지방행정주사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6.12.11가
발령 제712호 징계처분(감봉3월)
을 동일자로 변경 전체에 처함.

천 호 출 장 소 김 면 수
지방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6.12.11가
발령제 712호 징계처분(감봉6월)
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1월에
처함.

○ 1977.4.7

하 수 행정 과 최 완 행
지방행정주사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 무 과 김 관 회
지방행정주사

보 건 행정 과 김 현 락
지방보건기사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7.4.8

외 약 과 손 창 수
지방행정주사

도봉구 근무를 명함.

외 약 과 정 만 직
지방행정주사보

마포구 근무를 명함.

<p>마 포 구 지방행정주사보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p>	<p>윤하원</p>	<p>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총무과 파견해제</p>	<p>김상호</p>
<p>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비상계획보좌관 근무를 명함.</p>	<p>주정환</p>	<p>강남구 지방행정주사 녹지과 근무를 명함.</p>	<p>이기용</p>
<p>중 구 지방행정서기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박일용</p>	<p>성동구보정소 지방행정주사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이희백</p>
<p>도봉구 지방행정주사 연로시험소 근무를 명함.</p>	<p>김창열</p>	<p>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의약과 근무를 명함.</p>	<p>김만식</p>
<p>청소 2 과 지방행정주사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김우영</p>	<p>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기사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최완병</p>
<p>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중부명원 근무를 명함.</p>	<p>김영일</p>	<p>문화공보부 건축기사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문화재단담당관 근무를 명함.</p>	<p>김상희</p>
<p>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부녀과 근무를 명함.</p>	<p>이원실</p>	<p>강남구 서기관 시민과 지방행정사무관 윤지연습 '77 중앙통제단요원 파견 근무를 명함. (77.4.11 - 77.7.30)</p>	<p>김동훈</p>
<p>기획담당관 (파견중) 지방행정주사보 중구 근무를 명함.</p>	<p>최오근</p>		<p>이서용</p>

서울특별시장